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직원등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 2012. 3.12. 규칙 제5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기성회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의 퇴직금 지급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회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 기성회직원과 본교 근무하는 자 중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 제외) 근로자를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망 등을 포함한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3. "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본교 기성회직원 규정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제3조(적용)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급대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퇴직금 산정방법) ① 퇴직금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

$$(\text{퇴직금} = \frac{\text{본교에서 근무한 총 근무일수}}{365} \times \text{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

② 본교에서 근무한 총 근무일수는 기성회직원 등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고용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퇴직금의 청구)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퇴직금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위임장과 퇴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산상속 우선 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퇴직금의 지급) ① 퇴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퇴직금 지급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 지급한다. 다만, 청구 당일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의 지연사유와 지급이 가능한 예정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 지급 제외자) 퇴직한 기성회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계속 근무연한이 1년 미만인자
2.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여 퇴직금 청구시효가 소멸된 자(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자)

제9조(퇴직금 지급의 우선순위)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지급청구서 접수일자 순위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경우는 최우선 순위로 한다.

제10조(퇴직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법정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과오로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제11조(심사의 청구) ①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의 퇴직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퇴직금 수령일 또는 수령통지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퇴직금심사위원회 설치) 퇴직금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퇴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퇴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교학과장, 기획과장, 훈련과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퇴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6조(효력발생기간) 이 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한 퇴직금 청구나 심사청구 등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할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의 보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퇴직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성회 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은 매년 기성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퇴직기금은 기성회계 출납관이 관리·운영하며, 기금의 운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금전신탁

2. 기타

부 칙(제595호, 2012. 3.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의 경과조치) 2011. 3. 1. 이전 재직자의 퇴직금 재직기간은 2011. 3. 1.부터 재직한 것으로 산정한다.(2011. 3. 1. 이전 재직자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 완료)

(별지 제1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직년월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퇴직당시직명	

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직원 등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붙임 통장사본 1부.

. . .

청구인 (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인사담당자)
		. . . ~ . . . (총 근무일수 : 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 지급액 :

퇴직전월평균임금 : 원	퇴직금액 : 원	인사담당관 : 확인 (인)

결재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퇴직금 지급 결정 통지

※ 퇴직금 청구 접수번호 :

성 명				
주 소				
퇴 직 당 시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 . .~ . . .
퇴 직 금 액	일금 원정(₩)			
퇴 직 금 지 급 일 시				
지 급 장 소				

위와 같이 지급결정 통지하니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수령하기 바랍니다.

20 . . .

한 국 체 육 대 학 교 총 장

(별지 제3호서식)

기성회직원 등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소 속	직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퇴직일자	주 소	비고